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존 등록신청 자료 사용에 대한
비용분담 원칙 확립 등 〉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1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사용에 대한 비용분담 원칙 확립 등	3
2.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제도 등	11
3.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업무효력 승계 근거 마련	18

I. 제안경위

2025년 2월 5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공동등록 이후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의체의 사용 동의를 받아 후발 등록을 수행하여야 함.

후발 등록신청자에 대한 협의체의 비용 산정 및 분담 방안은 자율로 정함에 따라 후발 등록신청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거나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공동등록 협의체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등록 참여 주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을 통하여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후발 등록신청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 공

동등록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

아울러 현행법은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생산자”이라 한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이하 “대리인”이라 한다)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외제조·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의 효력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아 제도의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외제조·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의 효력이 새로운 대리인에게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대리인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사용에 대한 비용분담 원칙 확립 등

개정안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시 협의체 구성 절차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다른 등록자가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이후에 등록하려는 자가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활용에 대한 비용 분담·계상의 원칙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	-----
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	-----
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	-----
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등록신청자료는 <u>대표자</u> 를	----- 이를 공동제출 하기 위한 협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	<u>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u>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u>고 대표자</u>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	-----
인(이하 “개별제출확인”	-----

현행	개정안
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등록·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u> <u>1.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u> <u>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의 제시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u> <u>3. 특정 당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u>

첫째, 현행법 제15조¹⁾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3.5.22.)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였던 화학물질인 기존화학물질²⁾을 등록하려는 자는 각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으로 자료를 생산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금전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³⁾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함.

1) 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시행규칙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별 등록 및 사전신고 현황('24.12.)]

합계	'21년 유예 (1천톤 ↑, CMR)	~'24년 (100~1,000톤)	~'27년 (10~100톤)	~'30년 (1~10톤)
14,801종	714종*	1,020종*	6,317종**	6,750종**

*등록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등록완료 종수, **사전신고 종수

그런데 시행규칙 제17조4)에 따르면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원칙적으로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15조5)에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 등록 과정6)에서 기존 사업자들

- 4) **시행규칙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
- ④ 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5) **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6) **(기존화학물질의 공동 등록 절차)** 사전신고 → 협의체 구성 → 대표자 선정 → 협약 체결 →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및 등록 신청

의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대표자 선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률 상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둘째, 현행법⁷⁾은 연간 1톤 이상의 기존·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

7) **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

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기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⁸⁾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 제16조⁹⁾에서는 기존에 등록된 화학물질을 새롭게 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 시행규칙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9) 법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조·수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다른 등록자가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를 중복하여 제작하는 비용을 줄이고, 기존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존화학물질을 공동등록하는 과정 및 후발 등록자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구매·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용 비용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의체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분담 비용을 산정하여 통보하거나, 기존 등록자가 후발 등록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¹⁰⁾.

이에 개정안은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는 방안과 기존등록신청자료의 등록 이후 사용동시에 관한 비용 계상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분담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다 공정한 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후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분담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시행규칙 제17조¹¹⁾에는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0) 기업환경정책협의회, 2024.4.19.

11) 시행규칙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

분담에 관하여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원칙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어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등록신청자료의 공동등록·활용에 관한 원칙(안)]

개정안	원 칙
안 제16조의3제1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안 제16조의3제2호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의 제시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안 제16조의3제3호	특정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2.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제도 등

개정안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제도 및 조정 결렬 시 신청자료에 대한 제출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6조의4(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

현행	개정안
	<u>은 경우</u> ② <u>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③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④ <u>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⑤ <u>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u>

현행	개정안
<신설>	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4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현행	개정안
	<u>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첫째, 현행법령¹²⁾에서는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2) **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⑥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협의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및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후발 등록자에 대해서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협의체의 대표자가 매출액이 높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영세한 구성원에게 과도하고 비합리적으로 산정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음¹³⁾.

이에 개정안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한 자료를 공동제출하는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신규 등록자가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90일 이내(연장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조정의 신청 주체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조정 신청 요건(안)]

주 체	요 건
협의체의 구성원	공동제출하는 자료의 선택·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제출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안 제16조의4제1항제1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안 제16조의4제1항제2호)

13) 중소기업음부즈만, 2024.5.23.

참고로, 「관세법」 14), 「산업디자인 진흥법」 15) 등에서도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 사전 조정, 산업디자인 관련 분쟁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 14) 「관세법」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제시한 조정안을 조정의 상대방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정 신청인이 신청한 화학물질의 등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假)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조정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발 등록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재협의를 하거나 스스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업무효력 승계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기존의 대리인이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생략) <u><신설></u>	제45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외제조·생산자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② (생략) <u><신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38조16)에서는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

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¹⁷⁾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행정적으로 국외 제조·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진행 중인 절차를 취하하고 새로운 대리인이 동일 물질을 재등록·재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 절차 반복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음¹⁸⁾.

16) **법 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제32조에 따른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시행규칙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18) 외국인투자촉진법, 2024.3.12.

이에 개정안 제45조의2제2항은 현행법 제45조의2¹⁹⁾에 따른 상속인, 양수인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과 같이 국외 제조·생산자의 변경된 대리인의 경우에도 기존에 선임된 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이 기존에 선임된 대리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효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선임된 대리인이 과거에 수행된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하여 고지받고 승계에 동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가축전염병예방법」²⁰⁾, 「수산생물질병관리법」²¹⁾ 등에서

19) 법 제45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신고를 한 자,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7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2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41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 및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따라 관리자가 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 해당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해당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리도록 승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도 새롭게 선임된 자에게 고지 또는 동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